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1 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강선우

이연희 • 박홍근 • 홍기원

한준호 · 김주영 · 정진욱

박균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국,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,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「항공사업법」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일부로 분류하고, 드론 산업계 개선요구 등 법 개정 소요시마다 「항공사업법」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.

이에,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으나,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, 드론시스템의 운영·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사업의 등록, 양도·양수, 벌칙 등 드론사업 분야의 질서유지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

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「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는 바, 현행 「항공사업법」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조항을 이관하고, 기존 「항공사업법」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48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70조제4항 중 "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"을 "자는"으로 한다. 제75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	제48조(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
의 등록) ① (생 략)	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	②
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	
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	
한다.	<u>.</u>
1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	1
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.	<u>.</u>
다만,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	<u><단서 삭제></u>
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	
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	
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	
외한다.	
2.・3. (생 략)	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9조의2(무인항공 분야 항공산	<u><삭 제></u>
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) 국가	
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3호	
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	
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	
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, 정비	
·수리·개조, 사용 또는 이와	
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	

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
- 2.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

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

 사・연구
- 3.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 의 안전기술, 운영·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
- 4.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 의 조종, 성능평가·인증, 안 전관리, 정비·수리·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
- 5.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 업의 지원 및 육성
- 6.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 의 사용 촉진 및 보급
- 7.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 의 안전한 운영·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·운영
- 8.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

외진출의 지원

- 9.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 지
 - ① ~ ③ (생 략)
 -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 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 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, 지 방자치단체. 「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.
 - (5) (생략)
- - ④ (생략)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 | <삭 제> 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항공안전기 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 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 또 는 항공 관련 기관 · 단체에 위

제70조	즈(항공보험	등의	가입의	무)
1	~ ③ (현행	생과 같	음)	
4				
				- — —
	<u> 자는</u>			

⑤ (현행과 같음) 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| 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탁할 수 있다.